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건축법규 8주차

8주차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사회적 약자들을 어떻게 배려해야 하는가?



출처 : pixabay.com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The screenshot shows the homepage of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At the top right is the logo '신뢰할 수 있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Reliable Legal Affairs Commission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with a blue circular emblem. To the right is a graphic of a laptop with a red checkmark and the text '국가법령 만족도 조사'. Below the header is a navigation menu with seven categories: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판례·해석례등, 별표·서식, 학칙·규정, and 법령기타. The '법령' category is highlighted with a blue background.

법제처는 우리나라 모든 **법령 및 자치법규**를 제공합니다.

The screenshot shows a search interface. A search bar contains the text '법령/자치법규' and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To the right of the search bar are three buttons: a blue dropdown arrow, an orange question mark icon, and a magnifying glass icon.

1948년 이전 공포법령 중 원하시는 법령을 찾지 못하신 경우 국가기록
원에서 검색해보세요

국가기록원 ▾ 검색

누구를 배려해야 하는가?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어떠한 경우에 배려해야 하는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7.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영 제2조(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정의)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과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건축물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 자동차관련시설, 교정시설, 방송통신시설, 묘지 관련 시설, 관광 휴게시설 및 장례식장을 말한다.

어떻게 배려해야 하는가?

제3조(편의시설 설치의 기본 원칙)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시설주등"이라 한다)는 장애인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가능하면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시설주
2.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처분(「건축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를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등 절차를 진행 중인 자

제4조(접근권)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서비스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배려해야 하는가?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편의시설의 구조와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편의시설에 대한 안내 표시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정할 수 있다.

영 제4조(편의시설의 종류)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그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시행규칙 제2조(편의시설의 세부기준)

- ①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구조 ·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2

어떠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가? (편의시설 17종)

[별표 2] <개정 2018. 1. 30.>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일반사항

편의시설의 종류	설 치 기 준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가) 대상시설 외부에서 건축물의 주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는 장애인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유효폭·기울기와 바닥의 재질 및 마감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접근로를 (가)의 주출입구에 연결하여 시공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에 연결하여 접근로를 설치할 수 있다.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2

어떠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가?
(건축물용도별로 의무설치 또는 설치권장하는 편의시설)

나.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편의시설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그 밖의 시설			임산부등을 위한 휴게시설	
	주출입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높이제거	출입구(문)	복도	계단또는승강기	화장실			욕실	샤워실·탈의실	점자블록	유도및안내설비	경보및피난설비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대상시설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수퍼마켓 · 일용품 등의 소매점, 이용 원 · 미용원 · 목욕 장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1

[별표 1] <개정 2018. 2. 9.>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

편의시설의 세부기준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및 통로

...

경사로

...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

- (1) 휠체어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접근로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2) 휠체어사용자가 다른 휠체어 또는 유모차 등과 교행할 수 있도록 50미터마다 1.5미터×1.5미터 이상의 교행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 (3) 경사진 접근로가 연속될 경우에는 휠체어사용자가 휴식할 수 있도록 30미터마다 1.5미터×1.5미터 이상의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할 수 있다.

나. 기울기 등

- (1) 접근로의 기울기는 18분의 1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 곤란한 경우에는 1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 (2) 대지 내를 연결하는 주접근로에 단차가 있을 경우 그 높이 차이는 2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 경계

- (1) 접근로와 차도의 경계부분에는 연석·울타리 기타 차도와 분리할 수 있는 공작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와 구별하기 위한 공작물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하여야 한다.
- (2) 연석의 높이는 6센티미터 이상 15센티미터 이하로 할 수 있으며, 색상과 질감은 접근로의 바닥재와 다르게 설치할 수 있다.

라. 재질과 마감

- (1) 접근로의 바닥표면은 장애인등이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坦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 (2) 블록 등으로 접근로를 포장하는 경우에는 이음새의 틈이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고, 면이 평坦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 (3) 장애인등이 빠질 위험이 있는 곳에는 덮개를 설치하되, 그 표면은 접근로와 동일한 높이가 되도록 하고 덮개에 격자구멍 또는 틈새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간격이 2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 보행장애물

- (1) 접근로에 가로등·전주·간판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2) 가로수는 지면에서 2.1미터까지 가지치기를 하여야 한다.
2. 삭제 <2007.3.9>
3. 삽제 <2007.3.9>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대지경계선에서 건물출입구까지 구간)

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

(1) 휠체어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접근로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휠체어사용자가 다른 휠체어 또는 유모차 등과 교행할 수 있도록 **50미터마다 1.5미터×1.5미터 이상의 교행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3) 경사진 접근로가 연속될 경우에는 휠체어사용자가 휴식할 수 있도록 **30미터마다 1.5미터×1.5미터 이상의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할 수 있다.

나. 기울기 등

(1) **접근로의 기울기는 18분의 1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 곤란한 경우에는 1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2) 대지 내를 연결하는 주접근로에 단차가 있을 경우 그 높이 차이는 2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 경 계 라. 재질과 마감 마. 보행장애물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가. 설치장소

(1) 건축물의 부설주차장과 영 별표 1 제2호하목(1)의 주차장의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에 이르는 통로는 장애인이 통행할 수 있도록 높이차이를 없애고,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 자동차가 다니는 길과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통로와 자동차가 다니는 길이 교차하는 부분의 색상과 질감은 바닥재 와 다르게 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에 설치된 지하주차장의 경우 바닥재의 질감을 다르게 하기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바닥재의 색상만을 다르게 할 수 있다.

나. 주차공간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크기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3.3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주차 대수 1대에 대하여 폭 2미터 이상, 길이 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주차공간의 바닥면은 장애인등의 승하차에 지장을 주는 높이차이가 없어야 하며, 기울기는 50분의 1 이하로 할 수 있다.

(3) 주차공간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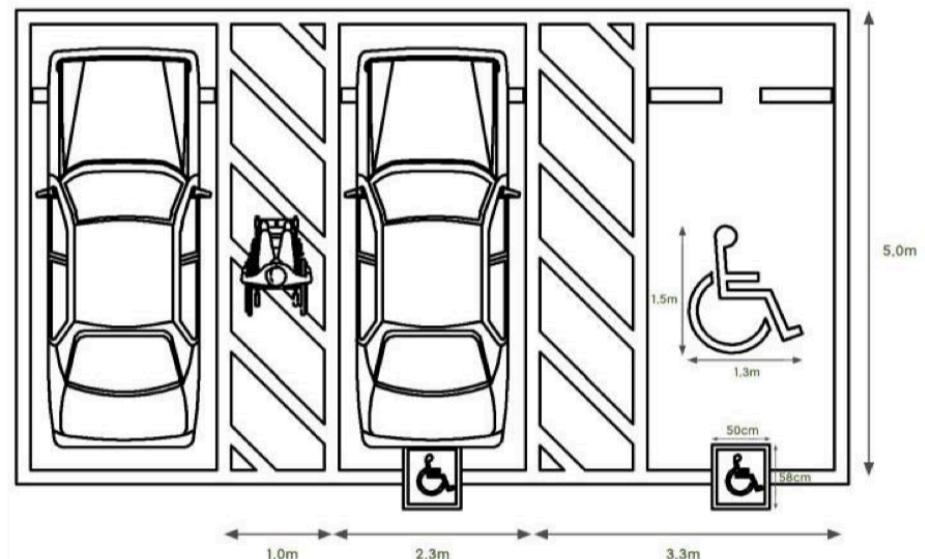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다. 유도 및 표시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과 주차구역선에는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 색상으로 아래의 그림과 같이 장애인전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장애인 전용표시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가) 바닥면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표시: 가로 1.3미터, 세로 1.5미터

(나) 주차구역선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표시: 가로 50센티미터, 세로 58센티미터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다. 유도 및 표시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를 주차장 안의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내표지의 규격과 안내표지에 기재 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의 규격은 가로 0.7미터, 세로 0.6미터로 하고, 지면에서 표지판까지의 높이는 1.5미터로 한다.

(나) 안내표지에 기재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고 있는 자동차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위반사항을 발견하신 분은 신고전화번호(지역번호)〇〇〇 - 〇〇〇〇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1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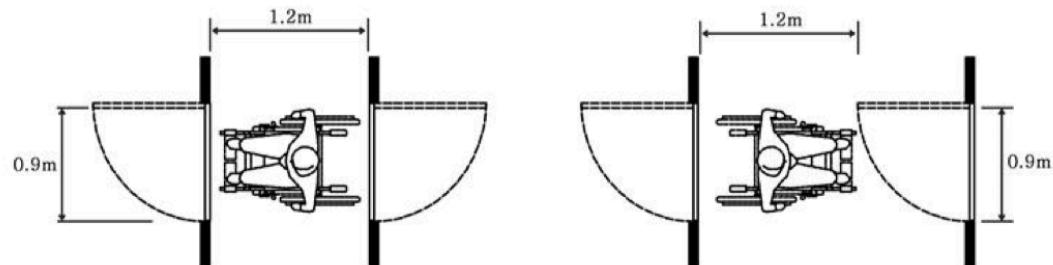
- 가. 턱낮추기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의 높이차이는 2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나. 훨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설치 훨체어리프트 및 경사로에 관한 세부기준은 제11호 및 제12호의 훨체어리프트 및 경사로에 관한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1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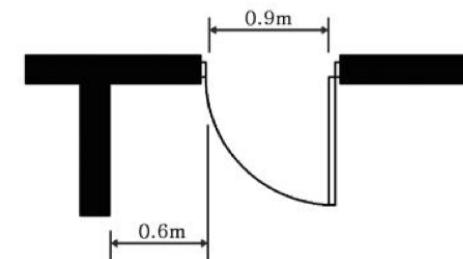
(1) 출입구(문)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그 통과유효폭을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출입구(문)의 전면 유효 거리는 1.2미터 이상으로 하며, 연속된 출입문의 경우 문의 개폐에 소요되는 공간은 유효거리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자동문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출입문 옆에 0.6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출입구의 바닥면에는 문턱이나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나. 문의 형태 다.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라. 기타 설비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및 통로

가. 유효폭

복도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되, 복도의 양옆에 거실이 있는 경우에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나. 바 닥 다. 손잡이 라. 보행장애물 마. 안전성 확보

참고 : 피난방화규칙 제15조의2(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당해 층 바닥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2미터/1.5미터

장애인등편의법 적용받는 건축물은 바닥면적과
상관없이 복도폭 적용

구분	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	기타의 복도
유치원 · 초등학교 중학교 · 고등학교	2.4미터 이상	1.8미터 이상
공동주택 · 오피스텔	1.8미터 이상	1.2미터 이상
당해 층 거실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5미터 이상(의료시설의 복도 1.8미터 이상)	1.2미터 이상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1

경사로

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

- (1) 경사로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을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1.2미터 이상의 유효폭을 확보하기 곤란한 때에는 0.9미터까지 완화할 수 있다.
- (2)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75미터 이내마다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 (3)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굽절부분 및 참에는 1.5미터×1.5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경사로가 직선인 경우에 참의 활동공간의 폭은 (1)에 따른 경사로의 유효폭과 같게 할 수 있다.

나. 기울기

- (1) 경사로의 기울기는 12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 (2)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경사로의 기울기를 8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다. 손잡이 라. 재질과 마감 마. 기타 시설

편의시설 설치·운영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이 조, 제10조의5, 제10조의6 및 제10조의7에서 "보건복지부장관등"이라 한다)은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 · 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상시설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 ② 대상시설에 대하여 인증을 받으려는 시설주는 보건복지부장관등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인증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인증 기준 · 절차, 인증기관 지정 기준 · 절차, 인증 비용의 부담, 그 밖에 인증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별표5] 건축물 인증지표 및 기준(제2조 관련)

범주	평가항목	평가기준	분류번호	배점
1. 매개시설	1.1 접근로	1.1.1 보도에서 주출입구까지 접근 접근로와 차도의 분리 여부 평가	B1-01-01	6
	1.1.2 유효폭	휠체어사용자가 통행 할 수 있는 접근로의 유효 폭 확보 정도로 평가	B1-01-02	3
	1.1.3 단차	대지 내를 연결하는 모든 접근로에 단차가 있을 경우, 진행방향상의 단의 높이차이 정도로 평가	B1-01-03	3
	1.1.4 기울기	접근로의 진행방향 기울기의 정도 평가	B1-01-04	3
	1.1.5 바닥 마감	미끄럼지 않은 바닥 재질 및 이음새, 그리고 마감정도의 평탄한 정도에 따른 평가	B1-01-05	3
	1.1.6 보행장애물	접근로의 보행장애물이 제거되어 보행안전 통로로서 연속성이 확보 되고, 차도와의 경계부분에 차도와 분리할 수 있는 공작물 설치 정도로 평가	B1-01-06	2
	1.1.7 덮개	빠진 위험이 있는 곳에 표면 높이가 동일하고, 격자구멍 또는 틈새가 없는 덮개를 설치하였는지 평가	B1-01-07	2
1.2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1.2.1 주차장에서 출입구까지의 경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에 가까운 곳에 설치하였는지 평가	B1-01-08	6
	1.2.2 주차면수 확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적정 주차면수 확보정도 평가	B1-01-09	4
	1.2.3 주차구역 크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크기 평가	B1-01-10	4
	1.2.4 보행 안전 통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에 이르기까지 보행안전통로의 폭 및 연속성 정도 평가	B1-01-11	4
	1.2.5 안내 및 유도표시	주차장의 입구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 표지를 설치하기 쉬운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 및 주차구역까지 적정 유도표시의 연속성 정도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 장애인전용주차장표시 및 입식안내표시의 적정 설치 정도 평가	B1-01-12	3
1.3 출입구(문)	1.3.1 출입구(문)의 높이 차이	출입구(문)의 안전하고 편리한 진입여부를 출입구(문)의 높이차이와 기울기로 평가	B1-01-13	6
	1.3.2 출입문의 형태	해당시설의 출입문의 형태로 평가	B1-01-14	3
	1.3.3 유효폭	출입구(문)의 통과 유효폭 확보 정도 평가	B1-01-15	3
	1.3.4 단차	출입구(문) 턱의 높이 차이 정도 평가	B1-01-16	3
	1.3.5 전면 유효거리	출입문의 전면 유효거리 확보 정도 평가	B1-01-17	2
	1.3.6 손잡이	출입문의 손잡이 형태 및 적정 높이 평가	B1-01-18	2
	1.3.7 경고블록	시각장애인에게 위험을 알려주는 경고블록의 설치 여부 평가	B1-01-19	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2 내부시설	
평가범주	2.4 경사로	
평가항목	2.4.2 기울기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경사로의 기울기를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가 안전하게 층간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며, 노약자나 임산부 등 다양한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동 가능하도록 함	
평가방법	경사로의 기울기 정도 평가	
배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경사로의 기울기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기울기
	최우수	1/18(5.56%/3.18°)이하로 설치하고, 횡단구배가 없음
	우수	1/12(8.33%/4.76°)이하로 설치하고, 횡단구배가 없음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2호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사로 상세도(단면도 포함) <p>*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p>
	본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비인증시와 동일